

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주요내용 】

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'18년 8월부터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.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“치매국가책임제” 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○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란?

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

○ 감경 적용범위(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)

- 의료급여 수급자권자 :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
- 차상위 경감대상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적용
-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(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)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

○ 감경제도 개선 사항

-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하고,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 차등 적용

변경전('18.7월까지)		변경후('18년 8월부터)	
대상	중위소득 50% 이하	보험료순위 25% 이하	보험료 순위 25% 초과~50% 이하
감경률	50%	60%	40%

- 직장가입자(피부양자포함)의 경우 가구원수별로 차등한 재산과표액을 적용하여 감경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높임

※ 재산과표액 : (현행) 가구원 수 구분 없이 2억4천만원 이하 일괄적용
(개선) 4인 가구 : 3억 2천9백만원 이하 등 차등 적용

◆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◆

	급여종류	일반	감경(변경전)	감경(변경후)	
			50%	60%	40%
본인부담률	시설	20%	10%	8%	12%
	재가	15%	7.5%	6%	9%